

# 물놀이형 수경(水景)시설의 수질관리 지침

2010.8.26 환경부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물놀이에 이용될 수 있는 수경시설의 수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지침에서 ‘물놀이형 수경(水景)시설’이란 수돗물, 하천수,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, 연못, 폭포, 벽천, 계류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대상)** 이 지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적용한다.

**제4조(수질기준 및 수질검사)**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②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자는 수경시설의 수질을 제1조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에 대하여 「먹는물관리법」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실시(시설의 가동을 개시한 때를 포함한다)하여야 하며, 시료는 가급적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이용자가 많은 날 오후에 채수하여야 한다.

④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0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수질검사 방법)**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는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.

1. 수소이온농도, 탁도, 질산성질소, 과망간산칼륨소비량 : 「환경분야 시

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

2. 대장균 :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

3. 레지오넬라균 : 질병관리본부 「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」 중 환경검체 시험분석방법

**제6조(자료관리 및 제출)**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자는 용수를 교체한 때에는 교체일과 교체수량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 관리자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7조(수질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)** ① 관리자는 물놀이 수경시설의 수질이 별표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특히,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시설가동을 중지하고, 소독 또는 용수교환 등의 조치를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수질 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을 재가동하여야 한다.

② 시설관리자는 계속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시설관리자는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설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용수관리)** 별표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를 사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소독·정화 설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.

## 부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(제4조 관련)

측정 항목	수질기준	비 고
수소이온농도	5.8 ~ 8.6	
탁도	4NTU 이하	
대장균	200(개체수/100mL) 미만	
레지오넬라균	-	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시설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관
질산성 질소	-	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관
과망간산칼륨소비량	-	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관

